

한국심초음파학회 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 운영규정

2017년 07월 01일 제정
제 1 차 개정: 2019년 05월 22일
제 2 차 개정: 2022년 04월 16일
제 3 차 개정: 2022년 11월 27일

제 1 조 (명칭) “한국심초음파학회 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 운영규정”이라고 한다.

제 2 조 (목적) 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 활동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지원대상 학회) ASE, EuroEcho-Imaging 를 대상으로 하며, 그 외의 해외학회의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학회를 추가할 수 있다.

제 4 조 (지원범위) 항공료, 숙박비, 등록비, 식대, 현지 교통비 항목으로 한하며 한국제약바이오협회,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,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(이하 ‘3 개 협회’라 한다)의 공정경쟁 규약 및 정산 가이드라인을 따른다.

제 5 조 (신청자격)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 신청할 수 있다.

제 1 항 한국심초음파학회 정회원인 자 중 신청시점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연회비 납부한 자 (정회원 가입 및 전환 2년 이내의 정회원의 경우 당해년도 연회비만 납부하여도 무방하다.)

제 2 항 초록 1 편 당 1 인만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. (단, 구연발표, 경쟁부문, 우수초록, YIA 는 발표자와 교신저자 합쳐서 2 인까지 지원 가능하며 공동저자는 해당되지 않는다. 타 기관으로부터 경비지원을 받지 않는 자

제 6 조 (지원신청 및 취소) 공지된 날까지 온라인 신청해야한다.

제 1 항 신청 시 초청메일 또는 채택메일 등 참가자격 증빙자료를 접수해야 한다.

제 2 항 지원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마감일 이전에 신청자 본인이 메일로 취소

연락을 해야 하며, 선정통보 이후 취소 또는 불참 시 피치 못할 사유가 없는 한 향후 2 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 7 조 (선정)

제 1 항 (선정위원회) 위원은 이사장, 학술이사, 국제교류이사, 총무이사, 총무단을 포함하여 10 인 내외로 이사장이 구성한다.

제 2 항 (선정기준) 신청자 중 '제 5 조 신청자격'을 충족한 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한다.

1. 1 순위 : 초청자 (좌장, 연자, 패널), 경쟁부문 수상자 (MIA 등), 구연채택 발표자, 경쟁부문 채택 및 우수초록 선정
2. 2 순위 (가산점)
 - ① 최근 2 년간 본 학회를 통해 해외학회 참가 지원 수혜를 받지 않은 경우 (15 점)
 - ② 최근 2 년간 JCU 논문 게재 건수 (1 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원저 및 종설을 게재 한 경우만 해당하며, 증례 및 편집자 의견은 제외한다 / 편당 10 점)
 - ③ 만 40 세 이하 또는 전임의 (5 점)
 - ④ 최근 2 년간 한국심초음파학회 추계학술대회 등록 (7.2 년동안 모두 참석 (2 점), 4.2 년동안 1 회 참석 (1 점))
 - ⑤ 최근 2 년간 한국심초음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제 1 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발표한 경우 (5 점)

제 3 항 (선정통보) 선정위원회는 선정 가능 인원이 확정된 후 지원자를 선정하고 개별 통보한다.

제 4 항 (선정자 변경불가) 선정된 이후 동일 초록의 다른 저자로의 지원자 변경은 불가하다.

제 5 항 (선정인원 여유분 처우) 제 6 조에 명시된 신청마감일 이후의 신청요청은 기각한다.

제 8 조 (수혜자 의무)

제 1 항 (품위유지) 본 규정으로 지원을 받는 수혜자는 해외학술대회 참석 시 한국심초음파학회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.

제 2 항 (정산서류 제출) 본 규정에 의해 지원받은 수혜자는 학술대회 참석 후 10 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① 해외 학술대회 참가 결과보고서
- ② 항공 탑승권 및 영수증 등
- ③ 학회 등록비, 숙박비 결제 영수증 및 현지교통비, 식사비 영수증 원본 등

제 3 항 (청탁금지법 준수) 제 4 조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한다.

제 4 항 (추계학술대회 발표) 본 학회로부터 해외학술대회 참가 지원을 받은 자는 1 년 이내에 한국심초음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동일 초록으로 발표하여야 한다.

제 9 조 (부칙)

제 1 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.

제 2 항 본 규정은 한국심초음파학회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발효한다.